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06호(號) 1931(昭和 6)년 9월 10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2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0월 1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9월 10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率表) 중(中) 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2,3,4,5급품(級品), 비누[石鹼], 냄비[鍋] 및 솥[釜], 인쇄지(印刷紙), 모조지(模造紙), 조입지(槽入紙), 포장지(紙), 하드롱지(紙), 크래프트지(紙), 롤지(紙), 아트페이퍼, 청주(淸酒), 탁주(濁酒), 백주(白酒), 미림(味淋), 식품류(食品類: 통조림[罐詰], 병조림[罐詰])의 항(項)을 삭제(削除)함.